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조사본부 추가 (제5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26. 2. 5.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 개정으로, 안보수사업무가 군사경찰에 추가됨에 따라,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국방부조사본부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에 추가하도록 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방산기술보호위원회상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본부 추가

※ 신·구조문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운영)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방첩사령부 <신 설>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운영)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방첩사령부 6. <u>국방부조사본부</u>

다. 입법효과 : 안보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본부를 추가하여 방산기술 유출 사전 예방과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수사) 가능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절차 신설 (제18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 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을 작성·이행할 의무 신설
- 이 때, 관리계획 수립기준, 점검,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보완요구 절차,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정명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 요청권 등 절차 신설

※ 신·구조문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법 제13조3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대상으로 30일 이내에 수립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보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계획을 접수한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대상기관에 관리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방위사업법 제50조의3의 승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직무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취급하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또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고용 또는 선임 기간이 변경된 경우(퇴직한 경우를 포함) 4.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5.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보안사고를 일으킨 경우

	6. 그밖에 관리 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법 제13조의3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인적사항 2. 대상 기술의 취급·관리 필요성, 허용범위 및 기간 3. 정보통신망 접근 및 시설물 출입 통제 방안 4.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방안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제17조의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위반 내용 및 시정이 필요한 사항 2. 시정 이행기간 ⑧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처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방위사업청장은 관리 계획 승인, 보완, 이행 점검 및 시정명령 시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리 계획 수립, 보완,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방사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	--

다. 입법효과 : 관리계획 수립의 원칙과 함께 수립, 점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실효적인 관리계획 이행 강제

3.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근거 신설 (제19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26.3.10.)에 따라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방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의 절차,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인건비 지원을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고용비용의 50% 이내로 한정

※ 신·구조문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규모는 전문인력 1인당 연간 고용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 지원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입법효과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여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방산보호 및 제도적 기반 강화